의안번호	제 433 호
의 결	2016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6년 8월 19일

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433 제출연월일: 2016년 8월 19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「아동복지법」제48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4조에 의거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종료('16.12.31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"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"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위탁대상 :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

○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('17. 1. 1 ~ '19. 12. 31)

○ 위 치 : 충청북도 소재

○ 수탁기관 :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 ※ 現 수탁기관 : (사복)어린이재단 (관장 최명옥, '15. 11. 16 ~ '16. 12. 31)

○ 위탁방법 : 공개모집

○ 사 업 비 : 349백만원(도비 100%) *연도별 변동가능

○ 위탁 주요사무

-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

- 기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이동에 대한 상담

-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

- 위탁가정의 사례관리,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

-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관리

-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정보 제공

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

※ 단, 위탁 전 관련조례 개정의 경우 위·수탁협약은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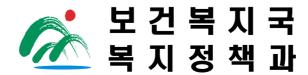
3. 참고사항

- 가. 現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현황
 - 센터 설립 경과
 -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(15.11.16)
 - ※ 「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부칙(경과조치)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공모 없이 위탁 지정
 - O 수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
 - 위·수탁 기간 : '15. 11. 16 ~ '18. 10. 1 * 도 조례제정('15.10.2)
 - ※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핵심사업위주 재편을 위해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업무를 위탁기간 만료 전 폐지('16. 12. 31.)
 - O 사 업 비 : 349백만원(도비 100%)
 - 기관위치 :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5(프뢰벨빌딩 3층)
 - 주요업무 : 가정위탁 홍보, 위탁가정 발굴, 사례관리, 정보 제공 등
 - 조직·인력: 10명(관장1, 상담원8, 심리치료전담인력1, 사무원1)

나. 관계법령 : 별첨

- 아동복지법 제48조(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)
-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(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)
-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(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)
-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, 제7조, 제8조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-**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**



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- ◇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예정('16.12.31.)됨에 따라 가정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기관을 선정,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
 - 공개모집 / 민간위탁(3년),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-

□ 추진근거

- 아동복지법 제48조(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), 동법 시행령 제49조
-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(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)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□ 위탁개요

- 위탁기간 : '17. 1. 1. ~ '19. 12. 31.(3년)
- 위탁범위 :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전반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
- 위탁사업비 : 349백만원(도비 100%) * 연도별 변동가능
- 위탁사무
 -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
 -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
 -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
 - 위탁가정의 사례관리,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
 -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관리
 -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정보 제공

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

※ 現 수탁기관: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(관장 최명옥, '15. 11. 16 ~ '16. 12. 31.)

□ 추진절차

① **의회동의**

② 수탁공고

③ 수탁심사

④ 협약체결

· 추진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의회동의

• 수탁기관 공고

- 방법 : 공개모집(15일 공고)

- 자격 :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요건 갖춘 자

·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

- 구성 : 6~9명 정도

- 심사 : 전문성, 사업실적, 사업계획 등

- 결정 : 최고 득점자 선정

· 협약체결 및 공증

′16.	8월
′16.	10월
′16.	11월

'16. 12월

① 의회동의

○ 동의근거 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 4조 제3항

<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③ >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어는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○ 동의시기 : 8월 임시회기중

② 수탁공고

○ 공고기간 : '16. 10월 (15일간)

○ 공고방법 : 도 홈페이지 공고

○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사·결정 (고득점자 선정)

○ 신청자격 :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

<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9조 ② >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

가. 법 제52조제1항제1호·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**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** 보호시설 또는 아동상담소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나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
다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
- 가.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
- 나. 별표 8에 따른 **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** 배치기준을 갖출 것
- 다. 별표 10에 따른 **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**을 갖출 것라. 법 제49조에 따른 **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**할 수 있을 것

○ 수탁조건

- 관계법령·조례·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
- 사업공간확보 및 임대운영시 임대보증금의 수탁기관 부담
- 현직자의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

③ 수탁심사 (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)

- 개최시기 : '16. 11월 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규칙 준용
 - 구성인원 : 6~9명정도(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 - ※ 당연직 3(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보건복지국장), 기타(전문가) 위촉
 - 심사항목 :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사회협력 등 ※ 기타 필수조건 확인(보건복지부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기준)
- 계 획 설 명 : 공모기관별 각 20분 이내
- 수탁자 선정 : 최고 득점기관 수탁관리자 선정, 수탁신청기관이 2개미만이거나 협약대상자 협약결렬시 재공모

④ 협약체결

- 체결 시기 : '16. 12월
- 내 용 :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, 업무 인계·인수

□ 향후계획

○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6. 8월

○ 수탁기관 선정공고 : '16. 10월 (15일간)

○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: '16. 11월

○ 협약 체결 및 공증 : '16. 12월

○ 위·수탁사무 개시 : '17. 1. 1.

붙 임 관련법령 및 조례 발췌

<아동복지법>

제48조(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시·도지사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,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아동복지법 시행령>

제49조(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)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가정위탁지 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,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일 것
- 가. 법 제52조제1항제1호·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 시설 또는 아동상담소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나.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- 다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- 가.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
- 나. 별표 8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
- 다. 별표 10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

라.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

<아동복지법 시행규칙>

제22조(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)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탁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,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정관

- 2.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(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,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)
- 3.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(아동복지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4.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
- 5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- 6.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평면도(층별·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,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)
- 7.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(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,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)
-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건물등기사항증명서,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<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>

제5조(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) ①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법 제45조제2항 및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 1개소이상 두어야 한다. 다만, 도지사는 시·군별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·군을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아동복지전담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 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 간 균형분포 및 법 제4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(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8조(위탁계약체결) ① 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·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부칙 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정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간 위탁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조례 시행 전에 위·수탁 협약이 체결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협약의 위탁기간을 따른다.

<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>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.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-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

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